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, ‘이동지원 서비스’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것임

3. 주요내용

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에 ‘이동지원 서비스’를 신설하여 ‘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’ 근거 마련(안 제20조의3 제1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3 제1항 본문 중 “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말한다”를 “다음 각 호와 같다.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
응급안전서비스
2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
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
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3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	제20조의3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
① 법 제32조의4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”란 「 <u>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말한다.	① ----- ----- ---- <u>다음 각 호와 같다.</u>
<u><신 설></u>	1. 「 <u>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
<u><신 설></u>	2. 「 <u>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</u> 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
<u><신 설></u>	3. 「 <u>장애인복지법</u> 」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287